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9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전종덕·정혜경·윤종오

송옥주・김 윤・이용우

용혜인 • 권향엽 • 이수진

김재원 · 임미애 · 장종태

신장식 · 김남희 · 서왕진

문금주 • 서영교 • 이개호

신정훈 · 모경종 · 서삼석

정을호 • 추미애 • 백혜련

의원(24인)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택

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 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 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 신설).
- 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 1항 신설).
- 라.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연금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가입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제23조의4제2항 신설).

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 23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근로를"을 "근로나 노무를"로, "말한다"를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항 제6호 중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국민연금에 가입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항 제11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사업장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를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 금에 가입된 자

나. 계약의 체결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

입된 자

제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 무제공자를 대표하는 위원 2명

제1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계약의 개시가 이행된 때

제14조제2항 중 "제13조까지의"를 "제1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에"를 "제21조,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2항 및 제23조의4제1항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임금에서"를 "임금이나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공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1조,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2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

- 제23조의2(예술인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8조제1항 본문에도불구하고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개시일에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의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3조의3(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에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3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 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자격 의 취득에 관한 사항
 - 3.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 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 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연금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가입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가입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3. 노무제공자의 가입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연금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 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가입자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 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23조의5(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원천공제) 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 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체납에 대해서는 제9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제1항 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92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8조제3항제3호에서 같다)에게"로 한다.

제10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 항에"로 한다.

- ② 국가는 국민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119조 중 "해고(解雇)나 그 밖의"를 "해고(解雇)나 계약해지·계약연장거절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등"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사용자, 가입자"를 "사용자, 가입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123조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3항제3호 중 "해고나 그 밖의"를 "해고·계약해지·계약연장 거절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등"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2항 및 제23조의4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이 개시
되어 해당 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	제3조(정의 등) ①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u>근</u>	3
<u>로를</u>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	근로나 노무를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	
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u>말한다</u> .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
	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u>있다</u>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	5
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	
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	

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 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u>사업장에</u>
<u>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u>
<u>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u>
<u>가입된</u>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 7. ~ 10. (생략)
-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 의 <u>사용자</u>가 부담하는 금액 을 말한다.

-----말하며, 가입자가 제2 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 6. -----<u>다음 각</u>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나. 계약의 체결로 제23조의2및 제23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7. ~ 10. (현행과 같음)
- 11. -----사용자(사업장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 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 만든 노무제공자인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 19. (생략)

② ~ ④ (생 략)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 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 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 거나 위촉한다.

1.·2. (생략) <신설>

3. ~ 5. (생략)

③ (생략)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 2. (생략)

<신 설>

12. ~ 1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대표하는
위원 2명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23조
의3제1항에 따라 계약의 개

- ① · ③ (생 략)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생 략)
 -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 자의 청구, <u>제21조에</u>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 ④ (생략)
-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 산) ① (생 략)
 -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 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가 이행된 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3조까지, 제
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③
제21조, 제23조의2제
2항, 제23조의3제2항 및 제23조
의4제1항에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
산) ① (현행과 같음)
(2)
임금이나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
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
자의 대가에서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 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 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 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 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③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
,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1	1. • 2.	(XI)	략)
	. • /	(^%	4)

- ④ (생 략)
-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 부터 납부받거나 장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u>근로</u> 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u>근로자에게</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⑥ (생 략)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저 ① 국민연금공단은 <u>제21조</u>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

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
<u>.</u>
⑥ (현행과 같음)
세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제21조, 제2
<u>3</u> 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23조의4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2장의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신 설>

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 제23조의2(예술인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 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 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 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 다)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 만인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 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 개시일에 당연히 사업장가 입자가 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한 다.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

인의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3(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

<신 설>

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 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 다)는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 구하고 해당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에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가 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자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 3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 고 18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사 <신 설>

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 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국민연금공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 의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가 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 항
- 3.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 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 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 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 료한 날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 에 관한 연금사무의 효율적 처 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 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 의 이용 및 가입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 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가입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3. 노무제공자의 가입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 자의 이름·직종·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 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모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u>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u> <u>야 한다.</u>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연금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가입 자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 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 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 여야 한다.

제23조의5(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원천공제) 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연금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u><신 설></u>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 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 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

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세
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기	천
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	세
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	そ
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i	킈
<u>야 한다.</u>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체
납에 대해서는 제90조제4항 !	킺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	제
납부 등) ①	
<u>제</u>	1
00조의3제1항 및 제2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4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 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근로
자(예술인과 노	무제공자를 포
함한다. 이하 제	92조제1항, 제1
19조 및 제1283	조제3항제3호에
<u>서 같다)에게</u>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현행 과 같음)

- ② 국가는 국민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 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미만일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로 정한다.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아니하거나 <u>해고(解雇)나 그 밖의</u>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u>해</u>
고(解雇)나 계약해지 · 계약연장
거절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배
제하는 약정을 하는 등
· 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사용자, 가입
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 제128조(벌칙) ①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
의 이용) ①
제100조
<u> 의3제1항 • 제2항</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8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 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u>해고나 그 밖의</u> 불리한 대우 를 한 사용자

4. (생략)

-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사용자
 - 2. (생략)
 - ② · ③ (생 략)

해고ㆍ계약해지ㆍ계약연장거
절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배
제하는 약정을 하는 등
4. (혂행과 같음)
제131조(과태료) ①
1. <u>제21조제1항 · 제23조의2제2</u>
<u>항ㆍ제23조의3제2항 및 제23</u>
조의4제1항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